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 등〉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45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명칭 변경 등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u>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u>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u>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u> ----- ----- -----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u>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u>

<신 설> ② <u>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u> ·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u>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u>----- -----.
---	---

현행법 제11조1)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말 기준 전국 166개(광역시: 17개 시·도 설치,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49개 시·군·구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먼저,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명칭에 사용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보임.

현행법 제3조제2호²⁾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청소년육성의 정의에 청소년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상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과 현행법 제10조³⁾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등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위원 참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말 기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2,039명 중 청소년 위원은 79명으로, 청소년 참여 비율은 낮은 수준임.

개정안과 같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추가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소년정책위원회⁴⁾의 위원에도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4)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 2026년 1월 현재 제5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27명 중 청소년위원은 6명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